

「화물운송서비스(택배) 평가업무 지침」 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의 제정('21.7) 및 개정('23.10)에 따라, 평가업무 지침을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으로 이관하고, 생활물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, 택배사업자가 종사자 권익개선 및 물류취약지역 서비스 품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게끔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정('21.7)에 따라 평가업무 지침의 근거법령을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으로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수정(안 제1조, 제2조제2호, 제3조, 제4조, 제13조)
- 나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개정된('23.10) 동법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라,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평가항목 개선(안 제6조, 별표 1, 별표 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-